

미국 행정책의 이중적 적용에 관한 분석 한국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대진대학교 노병렬

I. 서론

미국의 행정책은 실제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국제핵확산금지레짐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레짐의 제재구조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점은 현재의 레짐이 참여국들이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이의 해석과 제재방법을 둘러싸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은 특히 미국을 포함한 자유선진국가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짐형성 이후 발생되었던 다수의 국제적 경제제재나 정치제재는 대다수 비자유안보국가군(non-liberal security community)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점은 왜 미국이 파키스탄에 핵관련기술을 제공한 중국에 경제제재조치를 취했으며 다른 한편 이라크나 리비아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개발계획에 기술을 제공한 자유안보국가군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차별적인 제재조치는 동맹국의 이익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의 경우 1980년대에는 소련의 군사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개발계획을 의도적으로 방관한 반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에는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시켰다. 이에는 더 이상의 미국의 국가이익과 파키스탄의 국가이익이 같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먼저 제시하거나 취하지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나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핵확산금지레짐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가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은 레짐선도국가, 특히 미국에 의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적용이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의 이중적 핵정책이 한국안보전략수립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핵확산과 비핵확산, 그리고 대응핵확산

2.1. 핵확산의 현황

1945년 미국이 핵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구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그리고 중국(1964년)이 차례로 핵보유국가가 되었다. 이 국가들의 핵확산과정을 보면서 국제사회는 핵무기가 국가들의 군사전략 자체의 변경을 가져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핵무기의 국제정치적, 안보전략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핵개발의 원인이 존재하는 많은 지역에서 특정 국가들은 끊임없이 핵확산을 추구하거나 개발하여 왔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래 핵확산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1970년대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제3세계국가들의 핵개발추진, 1990년대에는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핵개발 추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경우의 국가들이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1년 6기의 핵무기를 자진해체하고 NPT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로서 기록되었다.

(표2-1): 핵확산의 현황

	Jo and Gartzke (1942-1992)		Singh and Way (1945-2000)		전략 핵탄두수
	핵개발 추진	핵개발 완료	핵개발 추진	핵개발 완료	
핵보유 국가					
USA	1942-	1945-	1945-	1945-	5,968
Russia	1943-	1949-	1948-	1949-	4,978
UK	1941-	1952-	1946-	1952-	200
France	1954-	1960-	1959-	1960-	350
China	1956-	1964-	1955-	1964-	100
Israel	1955-	1966-	1958-	1972-	75~200
India(1)	1964-1965		1964-	1974-1974	
India(2)	1972-	1988-	1980-	1988-	45~95
S.Africa	1971-	1979-1991	1974-	1979-1993	
Pakistan	1972-	1987-	1972-	1990-	30~50
발달된 핵개발 추진국가					
Brazil	1978-1990		1978-1990		
Argentina	1976-1990		1990-1990		
S. Korea	1971-1975		1970-1978		
N. Korea	1982-		1980-		
Libya			1970-		
Iraq	1973-		1982-		
Iran(1)	1974-1978				
Iran(2)	1984-		1985-		
과거 핵개발연구국가					
Switzerland			1946-1969		
Sweden	1946-1969		1954-1969		
Yugoslavia(1)			1954-1965		
Yugoslavia(2)			1974-1988		
Australia			1956-1973		
Taiwan(1)	1967-1976		1967-1977		
Taiwan(2)			1987-1988		
Algeria			1983-		
Romania			1985-1993		

출처: Alexander H. Montgomery, *Social Action, Rogue Reaction: US Post-Cold War Nuclear Counterproliferation Strategies*,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2005, p. 55에 나오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핵탄두수는 조 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2005년 4월 Arms Control Association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핵확산의 문제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에 있다.¹⁾ 즉 (표2-1)에서 나타나듯이 핵확산에 관계된 국가들의 과정을 살펴보면, 핵확산의 동기가 발생이 되면 언제라도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미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제약이 약해진 만큼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핵보유국가로 전환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초기형의 핵폭탄생산은 핵원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 모두에게서 가능한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더욱이 핵확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이다. 핵보유국가들에 의한 핵무기의 질적, 양적 팽창과 발전을 지칭하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은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핵의 수평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한편 소위 ‘병커 버스터(bunker buster)’로 명명되고 있는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4년주기 국방태세점검(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나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의하면 미국은 여전히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충분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

MD추진과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미국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최근 푸틴대통령의 연설에서 밝혀졌듯이 러시아 핵무기체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방비에 비해 25배나 많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의 건립과 토폴-M(Topol-M)미사일과 같은 신형무기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³⁾ 1980년대 말에 이미 세계 3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국 역시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와중에 군의 현대화, 특히 핵무기체계의 질적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체계의 정확한 규모는 연구기관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과 전술핵무기의 양적 팽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적다.⁴⁾

핵보유국가들의 수직적 핵확산은 과거 핵무기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핵보유국가간의 새로운 핵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핵의 수평적 확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핵현대화는 일본과 대만의 군사력증강과 연결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군사력 불균형현상을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핵현대화는 인도의 핵무기체계가 제2차 공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주고 있다.

1) Alexander H. Montgomery, "Social Action, Rogue Reaction: US Post-Cold War Nuclear Counterproliferation Strategies,"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2005, pp. 39-43.

2) 부시행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신무기에 대한 해석은 Christine Kucia and Daryl Kimball, "New Nuclear Policies, New Weapons, New Dangers," *Arms Control Association Issue Brief*, April 28, 2003, 참조.

3) 이와 같은 러시아 핵무기체계의 현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유가급등에 따른 러시아 재원확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Putin: Arms race with U.S. not over," *The Washington Times*, May, 10, 2006.

4) 대부분의 외국기관들이 추정하고 있는 종로 추정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자료에서는 1,800여기의 전략 핵무기와 550여기의 전술핵무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 103.

2.2. 핵확산금지레짐과 대응핵확산

현재 핵확산에 대응하여 핵통제방법으로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등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크게 비핵확산(non-proliferation)과 대응핵확산(counter-prolife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비핵확산은 1970년 NPT가 발효되기 이전에 핵개발을 완료한 5대 핵보유국가는 예외로 인정하고, 새로운 핵확산 자체를 방지하자는 원칙과 전략을 지칭한다. 비핵확산의 목표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핵무기개발, 사용,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는 모든 활동, 즉 NPT를 중심으로 핵물질통제, 미사일통제레짐 등의 국제조약이나 기구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국제핵확산금지레짐(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의 핵확산금지레짐은 (표2-2)에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2-2): 핵확산금지레짐의 구조

구분	구 성 항 목	설 립	가입국수
국제조약	the NPT	1970	188
	the Treaty of Tlatelolco	2002	33
	the Treaty of Rarotonga	1986	13
	the Southeast Asia NWFZ	1997	10
	the African NWFZ*	1996	44
	the Antarctic Treaty	1961	42
	the Outer Space Treaty	1967	94
	the Moon Agreement	1984	9
	the Seabed Treaty	1972	92
	Partial Test Ban Treaty	1963	124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1996	176
기구	IAEA 안전장치 INFCIRC/66	1965	118
	INFCIRC/153	1971	
핵물질통제	Zangger Committee	1971	29
	the Nuclear Supply Group	1975	44
	Wassenaar Arrangement **	1996	38
기 타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	34

출처: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and Nuclear Non-Proliferation*(New York: United Nations, 1995); SIPRI, *SIPRI Yearbook 1995*(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위 표는 200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하여 수정된 것임.

* 이 조약들은 아직까지 참가국들에 의한 비준이 되고 있지 않아 효력은 발생되지 않음.

** 바세나르협정의 주요목적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추적방지'로 핵확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하지만 이중용도 품목의 중요성에 의하여 포함시킴.

*** 미사일기술통제레짐의 레짐구성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핵확산금지레짐과 독립된 별도의 레짐으로 간주함.

5) 사실 비핵확산과 대응핵확산의 주요내용과 실천은 미국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의 핵확산에 대한 또 다른 전략은 '사후관리(consequence management)'부분이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한정적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핵통제방법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핵확산금지레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NPT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핵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가의 안보를 향상시킨다. 둘째, 효과적인 국제안전장치를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기여한다. 셋째, 세계적인 핵군축과 무기통제를 촉진시킨다.⁶⁾ 이와 같은 목적수행을 위해 NPT는 조약가입 국가들에게 반드시 IAEA의 안전조치와 사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PT조약에 의하면 각기 비핵국가들은 IAEA와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소유하고 있는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IAEA가 시행하는 사찰에 임하여야 한다.⁷⁾

비핵확산의 원칙과 목적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응핵확산의 원칙과 전략은 주로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대응핵확산은 비핵확산이 소극적으로 핵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대응핵확산은 미국이 보다 핵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행위, 군축, 수출통제,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여야하며, 핵확산을 시도하고자하는 국가나 불법단체들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MD체제를 포함한 적극적, 소극적 방어능력 확충을 통한 방어 및 완화태세 보강 등을 주요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⁸⁾

대응핵확산은 현재 미국의외정책의 핵심전략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발표된 부시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의 3대기조의 하나로서 확정된 대응핵확산 전략은 이미 핵개발을 시작하였거나 시도하려는 국가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핵확산에 복귀하게 하려는 '복종전략(compellent strategy)'도 포함하고 있다. 핵개발을 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의 목적에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박하거나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군사력을 동원한 수단은 이라크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중구적으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이루어낸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하는 미국의 대응핵확산전략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이다. 2003년 부시대통령에 의하여 천명된 PSI의 원칙은 '가상적대세력의 무기사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무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예방행동'이다. 이 예방행동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거래를 원천봉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따라서 무력을 동원한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위하여 참여 국가들은 국내법을 정비하여 PSI의 목적과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하며,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정보수집을 하여야한다.⁹⁾ 이러한 PSI는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개발에 필요한 원료나 기술 등 공급수단(supply-side)을 제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 MD체제의 구축, 확산의 공급수단제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6) Mohamed I. Shak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A Rereading before 1995,' in Joseph F. Pilat and Robert E. Pendel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New York: Plenum Press, 1990), p. 8 참조.

7) NPT 3조 1항, 그리고 3조 3항.

8) 대응핵확산의 개념은 1993년 미국의 에스핀 국방장관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수, 『비확산과 국제정치: 국제군비통제-이론과 실제』(서울: 법문사, 2004), pp. 74-75 및 최강,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년 6월13일, 외교안보연구원. pp. 1-2 참조.

9) PS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성호,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NSP Report, 동아시아연구원, 2005, pp. 5-11.

새로운 핵확산에 대응한다는 미국의 대응핵확산은 일견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는 있다. 이라크전쟁을 통하여 이라크 핵개발의 근원을 제거하였고, 외교적 압박과 협상으로 2003년 리비아가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였던 것은 대응핵확산의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힘에 의한 핵확산방지는 다른 한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받고 있으며, 특정 국가와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미국 대응핵확산의 협상과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II. 미국 핵정책의 이중적 적용과 원인분석

3.1. 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 차별적 적용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적용은 핵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핵확산에 대한 대응핵확산의 적용, 구체적으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의 유형을 조사하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1968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핵확산의 국제적 규범이나 원칙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조사한 Glenn Chafetz에 의하면 실제 핵확산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해당국가의 정체성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즉 미국을 포함한 자유국가안보군(liberal security community: LSC)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지 않은 위반국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고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LSC에 속한 국가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먼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이 국가군에 속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확산이 국제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유럽국가들과 일본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동유럽국가, 특히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온 국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가나 해당국가들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¹⁰⁾

(표3-1)과 (표 3-2)에 나오는 사례조사를 분석하면 다소 예외는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다. 즉 같은 원칙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자유국가군(LSC)에 대한 제재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 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제재는 어김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이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를 취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반면, 이라크나 북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NPT가입이전의 중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했다.

냉전시기의 차별적 대응이 국가정체성에 의한 것이었다면 냉전이후의 차별적 대응은 미국의 국가이익변화에 따라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있었던 인

10) Glenn Chafetz, "The Political Psycholog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7, No.3(August 1995), pp. 752-754.

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그리고 북한과 이라크, 이란의 핵개발시도에 대한 차별적 대응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미국은 2005년 핵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서 경제제재를 취하였던 미국은 9.11 이후 경제제재를 해제하였으며, 더 나아가 2005년 3월 인도를 방문하여 핵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핵심은 민간 핵시설로 분류된 인도의 22개 핵시설 중 14개 시설에 대해 국제사찰을 허가하는 대신 미국은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며, 나머지 8개 군용원자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다.¹¹⁾

인도와 미국의 핵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의 비핵확산원칙은 예외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NPT체제의 취약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²⁾ NPT에서의 핵보유국가들의 기득권을 인도에게도 인정한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NPT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핵개발 국가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게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핵확산에 있어 기술적 통제방법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핵공급국그룹(NSG)과 같은 다자간 국제핵확산금지레짐을 통한 비확산정책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미 핵개발을 완료한 국가에 대해서는 핵개발 그 자체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종래의 미국정책과 같은 궤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이라크의 핵개발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사담 후세인대통령이 제거될 만큼의 국내외적 변동을 통하여 무산되었다. 1991년 걸프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라크는 발달된 핵개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이 상당부분 붕괴되었다. 전쟁이후 UN의 결의에 의하여 이라크는 IAEA의 사찰을 받게 되었으며, 사찰결과에 의혹을 가진 미국에 의하여 또 다른 이라크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전쟁과 10년 이상 지속된 경제제재의 결과, 이라크는 더 이상의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라크가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지 또는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대응핵확산전략이 국가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하여 오랜 기간 핵개발의혹을 사고 있는 이란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NPT 규정 내에서 나탄즈(Natanz)지역에 실험용 및 상용 우라늄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라크(Arak)지역에는 중수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이란은 2003년 IAEA와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에 대한 서명을 하였고, 2004년 EU 3개국(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은 실험실 수준의 연구 및 우라늄변환 등 농축준비활동을 포함하여 이란의 '모든 농축관련 활동 및 재처리활동'중단에 합의하였다.¹³⁾

11) 이상현, "미국-인도 핵협력과 강대국 신전략구도," 『정세와 정책』 2006년 4월호, p.6.

12) William C. Potter, "India and the New Look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Nonproliferation Review*, Vol.12, No. 2(July 2005), pp. 347-350.

13) 추가의정서는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의 부재까지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IAEA는 특정국가의 신고유무에

해결의 기미가 보였던 이란의 핵개발문제는 2005년 6월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의 핵개발은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주권임을 강조하는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이란은 EU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우라늄농축에 착수하였다.¹⁴⁾ 이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하여 미국은 지속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 핵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는 IAEA 특별이사회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전 핵확산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핵위기시 북한에 대해 보여주었던 클린턴 행정부의 상대적인 유화정책은 9.11 이후 일방주의에 입각한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미간의 핵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작년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의 방법까지 미국으로 하여금 고려하게 하였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합의된 6자회담의 결과나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북한핵문제는 대결보다는 협상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곧 북한의 핵폐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정보 및 장소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검증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최신기기의 활용권도 부여받고 있다. 1997년에 채택되었다. 이란의 핵활동 및 경과에 대해서는 정은숙, 「이란의 핵문제: 분석과 전망」(성남: 세종연구소, 2005), 참조.

14) 손성환, “이란 핵개발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년 3월 10일, pp. 1-4.

(표 3-1)

핵확산금지에 관한 국제적 규범이나 원칙을 위반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1968~1994)

위반국가	제재당시 자 유주의에 대 한 정책정도	LSC	위반사항 또는 추정되는 위반	제재의 강도	시기
Argentina	Absent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Nuclear fuel shipments suspended	1978 ~ 1982
Argentina	Weak	No	Attempted to import missile technology	Missile technology sales blocked	1987
Argentina	Moderate	No	Developed condor II missile	Sensitive technology sales blocked	1991
Brazil	Absent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Uranium shipments suspended	1978 ~ 1981
Brazil	Weak	No	Attempted to import missile technology	Sensitive technology sales denied	1988
Brazil	Weak	No	Attempted to import missile components	Reexport of missile components blocked(temporarily)	1990
China	Absent	No	Exported M-11 missile parts to Pakistan	Satellite components and supercomputers denied	1991
China	Absent	No	Pursued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Space and satellite technology denied	1993
European Community	Strong	Yes	Maintained insufficiently restrictive nuclear safeguards	Canada denied uranium shipments	1977
France	Strong	Yes	Tested nuclear weapons in the South Pacific	Australia suspended uranium shipments	1983 ~ 1986
India	Weak	No	Tested a nuclear weapon	Canada cancelled nuclear assistance	1974 ~ 1976
India	Weak -Moderate	No	Developed a nuclear weapons program	Nuclear cooperation denied multilaterally starting 1978	1974
India	Moderate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Suspended nuclear fuel shipments	1978 ~ 1982
India	Moderate	No	Attempted to import	Denied supercomputers	1990
India	Moderate	No	Signed contract to import cryogenic rocket technology from Russia	U.S. denied space cooperation and France denied sale of launcher technology	1992
Iran	Absent	No	Pursued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All export licenses denied	1992
Iran	Absent	No	Contracted to import enriched uranium from Argentina	ALL MTCR and NSG controlled technologies presumptively denied(U.S. sanctions are even broader)	1992
Iran	Absent	No	Acted as a "Rogue State" in proliferation and other matters	ALL MTCR and NSG controlled technologies presumptively denied(U.S. sanctions are even broader)	1993-
Iraq	Absent	No	Developed a nuclear weapons program	UN mandated destruction and destruction of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1991-
Iraq	Absent	No	Acted as a "Rogue State" in proliferation and other matters	ALL MTCR and NSG controlled technologies presumptively denied(U.S. sanctions are even broader)	1993-
Israel	Strong	Yes	Developed and ex-ported missiles	France blocked admittance into MTCR	1992
Japan	Strong	Yes	Maintained insufficiently restrictive nuclear safeguards	Canada suspended uranium shipments	1977

(표 3-1)

위반국가	제재당시 자 유주의에 대 한 정책정도	LSC	위반사항 또는 추정되는 위반	제재강도	시기
Libya	Absent	No	Attempted to import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Exports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denied(nuclear if related to nuclear violation)	1985
Libya	Absent	No	Ated as a "Rogue State" in proliferation and other	ALL MTCR and NSG controlled technologies presumptively denied(U.S. sanctions are even broader)	1993-
North Korea	Absent	No	Developed a nuclear weapons program	USSR suspended sale of 4 nuclear reactors	1990
North Korea	Absent	No	Pursued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Export licenses denied	1992 (March)
North Korea	Absent	No	Pursued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Export licenses denied	1992 (July)
North Korea	Absent	No	Acted as a "Rogue State" in proliferation and other matters	ALL MTCR and NSG controlled technologies presumptively denied(U.S. sanctions are even broader)	1993-
North Korea	Absent	No	Failed to allow IAEA inspections	IAEA suspended membership and suspended cooperation (redundant)	1994
Pakistan	Absent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Nuclear fuel and spare parts deliveries suspended and Canada cancelled sale of fuel fabrication plant	1974 ~ 1976
Pakistan	Absent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All military and eco-nomic aid reduced(U.S.)	1979 ~ 1980
Pakistan	Absent	No	Imported Chinese M-11 missile parts	All export licenses denied for two years	1991
Pakistan	Absent	No	Developed a nuclear weapons program	NSG blocked sales of reactor equipment	1991-
Pakistan	Absent	No	Pursued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Export licenses and government contracts suspended for two years	1993
Russia	Weak	No	Contracted to export cryogenic rocket technology to India	Cooperation with Russian space agencies prohibited for two years	1992
Russia	Weak	No	Exported cryogenic rockets to India	Cooperation with Russian space agencies prohibited for two years	1993
South Africa	Weak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Fuel shipments suspended	1975 ~ 1982
South Africa	Weak	No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East bloc and non-aligned states voted South Africa out of the IAEA	1978
South Africa	Moderate	No	Received aid from Israel in developing missiles	Cooperation with South African military industry prohibited	1991
South Korea	Weak	No	Contracted to purchase nuclear re-processing plant	U.S. and Canada promised suspe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if plant purchased	1975 ~ 1976
Syria	Absent	No	Pursued missile proliferation activities	Export licenses denied	1992
Taiwan	Absent	No	Sought nuclear reprocessing capabilities	Delivery of fuel shipments and research reactor delayed	1976 ~ 1977

(표 3-2)

핵확산금지규범이나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무제재의 유형

위반국가	In LSC	자유주의의 정도	위반사항 또는 추정되는 위반	시기
Austria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Brazil	No	Weak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Brazil	No	Weak	Contributed to Iraq'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efore 1991
Belgium	Yes	Strong	Supplied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 to South Africa	1981~1985
China	No	Absent	Supplied weapon design information to Pakistan	1980s
Egypt	No	Absent	Contributed to Argentina's Condor missile program	1983~1988
France	Yes	Strong	Supplied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 to South Africa	1981~1985
France	Yes	Strong	Contributed to Argentina's Condor missile program	1983~1988
France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Germany	Yes	Strong	Contributed to Argentina's Condor missile program	1983~1988
Germany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Germany	Yes	Strong	Supplied technology for Iraq's development of nuclear warheads	Before 1991
Germany	Yes	Strong	Exported rocker-testing equipment to Brazil	Before 1991
Great Britain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Great Britain	Yes	Strong	Sold Israel supercomputers used for nuclear warhead and missile design	1991
Israel	Yes	Strong	Failed to adhere to nuclear safeguards	1968-
Israel	Yes	Strong	Conducted nuclear weapons pro-gram in violation of NPT	1968-
Israel	Yes	Strong	Aided development of South	1960s~1992
Israel	Yes	Strong	Stole krytons(triggers for nuclear warheads)from U.S.	Early 1980s
Israel	Yes	Strong	Conducted missile program	1987-
Israel	Yes	Strong	Reexported U.S. missile tech-nology to China	1991
Italy	Yes	Strong	Contributed to Argentina's Condor Missile Program	1983~1988
Italy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Italy	Yes	Strong	Supplied plutonium extraction laboratory for Iraq's nuclear weapons program	Before 1991
Switzerland	Yes	Strong	Supplied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 to South Africa	1981~1985
Switzerland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Switzerland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efore 1991
United States	Yes	Strong	Aided France in nuclear warhead radiation hardening and design before France joined NPT	1969~1991
United States	Yes	Strong	Supplied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 to South Africa	1981~1985
United States	Yes	Strong	Permitted reexport of thermal treated rocket motor components to Brazil	August 1990
United States	Yes	Strong	Contributed to Iraq's Scud missile	Before 1991
United States	Yes	Strong	Supplied computer technology for Iraq's nuclear weapon's laboratory	Before 1991

3.2.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의 이념적 원형과 성격

북한과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인도나 이스라엘의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나 대응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정치문화, 특히 이념적 속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미국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이념 중에서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는 가장 핵심적 특성이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념은 신대륙으로의 이주배경, 국가형성과정, 그리고 국내적 팽창과정에서 배태된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 같은 것으로 선민의 식이나 우월적 심리와 동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외주의는 도덕주의, 이상주의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원주의(Messianism)정서와 결합되어 미국적 가치의 세계화나 인종주의로 변질되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미국의외교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어떠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행위의 정당성과 명분을 항상 강조하였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국제문제에 간여할 때마다 미국은 국가의 국제정치적 역할에 대한 차별성을 내세웠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내용은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라는 항목이다. 미국을 건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liberalism), 공화주의(republicanism), 칼빈주의(Calvinism)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재산권과 경제적 개유주의 및 경쟁의 가치에 대한 믿음”(백창재 2003, p. 128)이다. 이 믿음은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가치는 인류가 지향하여야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보편적 덕목(universal virtue)을 의미한다. 특히 칼빈주의에 바탕을 둔 선민의식과 소명의식을 믿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미국은 “특별한 신념을 지닌 특별한 국가(A special state with a special destiny)”로서 “신에 의해서 정해진 숙명(Manifest Destiny)”을 지니고 있다.

‘신에 의하여 정해진 숙명’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미국인들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악과 부패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미국인들의 소명의식은 세계를 미국과 미국이 아닌 타자로 구분하며, 이는 곧 ‘선(good)’과 ‘악(evil)’의 이분법적 세계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선’인 미국은 ‘악’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하여야하며, “악”을 응징하여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천년왕국’관념과 함께 ‘대각성(Great Awakening)’의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전역에 파급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현대 미국의 정치와 외교, 사회 등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선민의식의 근원이 되고 있다.¹⁵⁾

15) ‘천년왕국’사상은 본래 복시록에 기초한 믿음으로 신의 전사들이 악과의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신성공동체(Holy Community)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대각성’은 1726년부터 1756년까지 약 30년간 지속된 미국의 종교적 부흥운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화』 ((서울 : 삼인, 2003), pp. 131-133 참조.

세계를 구원하고자하는 미국인들의 소명의식은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근간이 되고 있다. 미국건국 이후 나타나는 미국외교의 방향이 국제관계의 진행에 미국의 개입범위를 줄이고 대신 미국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것에 치중하자는 고립주의(isolationism)와 국제관계에 있어 미국의 지도적 역할규정과 적극적 국익의 추구를 주창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로 대별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의 수립은 가장 중요한 미국외교의 목적이 되고 있다. 냉전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악의 제국(evil empire)'이나 '악의 축(evil axis)'을 모두 제거하여야하며, 이는 미국의 도덕적 의무인 것이다(백창재 2003, p. 131).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면 해당국가가 미국이 바라보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Chafetz가 설명하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가치를 부여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미국은 같은 사안에서도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한국안보전략수립에 대한 합의

1953년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을 체결한 이후 양 국가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왔다. 한미군사동맹이 초기와 달리 군사부분이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왔으며, 그 결과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불거진 양 국가간 입장의 차이는 과거와 달리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무현정부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질적 변화'요구와 주장은 한국내부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동맹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먼저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전략이나 동맹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9.11 이후 강화된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의 핵심은 "강력하고 잘 훈련된 군사력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 주도국의 입지 공고화"(동아시아연구원 2006, p. 14)로 요약되며, 이를 바탕으로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2006년 발표된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이나 '국가안보전략서'의 내용에 의하면, 미국은 기존의 미국동맹국들에게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하여 현재보다 더 큰 부담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변화는 현재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테러, 핵확산, 그리고 독재정권의 존재를 거론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야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입장차이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동아시아연구원 2006, p. 15).

동북아와 한국의 정치적 상황변화 역시 미국의 동맹전략과 안보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역내 국가들 관계가 아직까지 세력균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군사력강화는 긴장과 대립을 가져오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경계와 협력체제의 구축은 과거와는 달리 역내 국가간 동맹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중관계의 변화는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강화움직임 또한 중일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협력과 경쟁양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내부상황의 변화도 한미동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등장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한국 내에서의 민족주의대두이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성향은 북한위협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위상고조와 일본과의 외교분쟁, 그리고 주한미군주둔문제에 대한 호혜적 평등관계요구 등 다양한 원인에 기초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경우 역시 9.11 이후 제기된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맹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미동맹의 전략적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은 미일동맹이나 미영동맹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¹⁶⁾ 이것은 향후 미국의 전략적 이해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는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더욱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한국의 한미관계변화요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상기한 요인으로 인하여 한미동맹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새로운 변화요인들을 수용하면서 양 국가의 동맹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꾸준히 하여왔다. 이들 주장의 근거에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요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한미동맹, 특히 한미군사동맹에서 파급되었던 '비대칭적 동맹구조'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간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충분히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 국가는 '안보협력에 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하며, '한국의 자체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에 맞춰 동맹관계의 범위를 재조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Levin 2004, pp. 52-55;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60-70).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는 어떠한 형태이던지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변화된 동맹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

16) 미국의 퓨 리서치(Pew Research)가 미국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2005년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향후 동맹국가로서 중요한 국가로 한국은 주목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미동맹관계의 축소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이어 2번째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EAI,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p. 7-8.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주장하는 실질적 동맹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안보에 대한 인식이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미간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된 국제환경은 세계적 차원의 안보위협요소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에 한국이 부응하는지의 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 국한된 한미동맹의 군사적 기능이 이제는 한반도 영역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의 한미협력체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미국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맹관계를 구축하자는 요구에 동감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 역시 동맹국가로서의 역할과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미국정책의 이중적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특수한 상황이나, 미국 국가이익의 변화, 그리고 동맹관계의 정도 등 많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국제정치를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다 본 설명은 나름대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분석틀로서는 한계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정책, 특히 대응핵확산정책의 실제적 적용은 행정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단일한 또는 복합적인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미국정책의 이중적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문화, 특히 외교정책결정에 미치는 이념적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Chafetz가 분석한 LSC에 대한 사례연구결과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핵확산국가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대응 역시 미국의 이념적 가치에 동조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대응핵확산은 핵확산 자체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국제적인 규범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미국국가이익의 변화나 국제정치관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중적 정책이 북한핵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국가이익에 의하여 변화한다면,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이미 발생한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핵확산의 문제를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인정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한국안보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정책의 기조나 이념적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한미동맹의 변화도 국가이익의 범주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용립. 2003. 『미국의 정치문명』. 서울 : 삼인.
- 김경수. 2004. 『비확산과 국제정치: 국제군비통제-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노병렬. 1999. “핵확산금지레짐에 대한 이론적 모색: 북한 핵문제와 안보레짐의 한계.” 『국방정책연구』. 제47호.
- 노병렬. 2000. “미국 핵정책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 통제된 핵확산의 개념과 방법론서안.” 『안보학술논집』. 제11집1 제1호.
-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백창재. 2003. “미국의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제9권1호,
- 손성환. 2006. “이란 핵개발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6년 3월 10일,
- 신성호. 2006. “강압외교.” NSP Report. 동아시아연구원.
- . 2005.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 NSP Report. 동아시아연구원.
- 이동휘. 2005. 『한미동맹관계의 원근과 명암』.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이상현. 2006. “미국-인도 핵협력과 강대국 신전략구도.” 『정세와 정책』. 2006년 4월호.
- 정옥임. 2005.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한반도 군비통제』. 제38권(2005, 12).
- 정은숙. 2005. 『이란의 핵문제: 분석과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 조순구. 2005. “핵무기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5집3호.
- 최강. 2005.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년 6월13일. 외교안보연구원.
- 하영선, 전재성 공저. 2006. “제2차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평가와 전망.”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11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2005.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Albright, David. and Paul Brannan. "The North Korean Plutonium Stock Mid-2006."
<http://americancorners.or.kr/e-infrusa/www517.htm>(검색일: 2006년 6월 27일)
- Bhattacharjee, Anjali and Sammy Salama. 2003. "Libya and Nonproliferation." *CNS Research Story*. December 24.
- Bundy, McGeorge. 1984. "Existential Deterrence and Its Consequences." in Douglas MacLean. ed., *The Security Gamble: Deterrence Dilemmas in the Nuclear Age*. Totowa, N.J.: Rowman and Allanheld.
- Chafetz, Glenn. 1995. "The Political Psycholog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7, No.3(August)
- Cohen, Avener and Benjamin Frankel. 1990. "Opaque Nuclear Proliferation."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3. No. 3(September).
- Cordesman, Anthony H. and Khalid R. Ai-Rodman. 2006. *Iranian Nuclear Weapons? The Options if Diplomacy Fails*. Washington D.C.: CSIS.
- Drell, Sidney D. and James E. Goodby. 2005. *What are Nuclear Weapons For?: Recommendations for Restructuring U.S. Strategic Nuclear Forces*. An Arms Control Association Report.
- Joock, Neil. 1990. "Tacit Bargaining and Stable Proliferation in South Asia."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13. No. 3(September).

- Kucia, Christine and Daryl Kimball. 2003. "New Nuclear Policies, New Weapons, New Dangers." *Arms Control Association Issue Brief*. April 28.
- Levin, Norman D. 2003. *Do the Ties Still Bind: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After 9/11*. Santa Monica, CA: RAND.
- Mauil, Hanns W. 1994.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Genesis, Motives, Implications." *Aussenpolitik*. Vol. 45. 4th Quarter.
- McFadden, Eric J. G. 1988. "The Legality of Nuclear Weapons: A Response to Corwin,"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 No. 3(Spring), 313-342.
- Mearsheimer, John J.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Summer).
- Montgomery, Alexander H. 2005. *Social Action, Rogue Reaction: US Post-Cold War Nuclear Counterproliferation Strategies*.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Niksich, Larry A. 2006.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April 7.
- Park, John S. 2005.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4(Autumn).
- Potter, William C. 2005. "India and the New Look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Nonproliferation Review*. Vol.12. No. 2(July).
- Preez, Jean du. 2006. *Defusing The Iranian Nuclear Crisis: A Carrot and Stick Approach*. CNS Research Story.
- Sanger, David E. 2006.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y 18.
- Shaker, Mohamed I. 1990.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A Rereading before 1995." in Joseph F. Pilat and Robert E. Pendel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 Spector, Leonard S., Mark G. McDonough and Evan S. Medeiros, eds. 1995. *Tracking Nuclear Proliferation: A Guide in Maps and Charts, 1995*.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Squassoni, Sharon A. and Andrew Feickert. 2004. "Disarming Liby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 Stein, Ted L. 1985. "The Approach of the Different Drummer: The Principle of the Persistent Objector in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26, No. 2(Spring). 457-482.
- Trachtenberg, Marc. 1989.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1(Summer).
- Williamson, Jr., Richard L. 1995. "Law and the H-Bomb: Strengthe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o Impede Advanced Proliferation,"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28, No. 1, 71-168.